

○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중개사무소에 관한 표시·광고 명시사항)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·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3. 중개사무소의 “연락처”는 ‘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)’를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)는 표시할 수 없다.</u></p>	<p>제3조(중개사무소에 관한 표시·광고 명시사항) ----- ----- -----.</p> <p>3. ----- ----- -----<u>. 이 경우,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)는 표시할 수 없으나,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하에 표시·광고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임을 명시하고 연락처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5조(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·광고 명시사항)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·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4. “중개대상물 종류”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에 따른 <u>지목의 종류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(예시) 전, 답, 과수원, 목장용지, 임야, 광천지, 염전, 대(垓), 공장용지, 학교용지, 주차장, 주유소용지, 창고용지, 도로, 철도용지, 제방(堤防), 하천, 구거(溝渠), 유지(溜池), 양어장, 수도용지, 공원, 체육용지, 유원지, 종교용지, 사적지, 묘지, 잡종지로 구분하여 표시</p>	<p>제5조(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·광고 명시사항) ----- ----- -----.</p> <p>4. “중개대상물 종류”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에 따른 <u>토지대장 등에 표기된 지목의 종류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 삭 제 ></p>
<p>제6조(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·광고 명시사항)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·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소재지”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한다.</p> <p>나.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해당건축물의 지번과 동, 층수를 포함하여야 한다. 다만,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/중/고로 대체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·광고 명시사항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.</p> <p>나. ----- ----- <u>주택(주택법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한다)은 -----.</u> ----- -----.</p>

다. 건축물 중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의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읍·면·동·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, 이 경우 층수는 포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층수는 포함하여야 한다.

2. “면적”은 전용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

4. “중개대상물 종류”는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, 건축물은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는 “미등기건물”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.

(예시) 단독주택, 공동주택, 제1종 그린생활시설, 제2종 그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(老幼者: 노인 및 어린이)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락(慰樂)시설, 공장, 창고시설,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, 자동차 관련 시설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교정(矯正) 및 구사 시설, 방송통신시설, 발전시설, 묘지 관련 시설, 관광 휴게시설, 장례시설, 야영장 시설, 미등기건물,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구분하여 표시

5. ~ 7. (생략)

8. “방수 및 욕실 수”는 건축물 현황도 등을 통해 확인한 방수 및 욕실 수를 표시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

9. (생략)

10. “주차대수”는 총 가능한 주차대수 또는 세대 당 가능한 주차대수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

11. · 12. (생략)

다. 가목과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읍·면·동·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,

2. -----
-----, 이 경우 전용면적은 집합건축물 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 또는 일반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현황 면적을 표시하고, 건축물대장상 면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측면적 등을 표시한다.

4. “중개대상물 종류”는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, 건축물은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는 “미등기건물”,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“위반건축물”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.

<삭제>

5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---- 및 욕실(또는 화장실) 수”-----
----- 및 욕실(또는 화장실) 수를 -
-. 다만,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(준주택을 포함한다)이 아닌 건축물은 ‘방수’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.

9. (현행과 같음)

10. ----- 건축물대장상 -----
-- 주차대수를 -----
-. 다만,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가능한 주차대수가 다른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.

11. · 12. (현행과 같음)